외환거래기본약관 개정 전후 대비표

개 정 전	개 정 후	비 고
외 환 거 래 기 본 약 관 [외화송금, 외국통화매입, 외화수표 등의 매입(추심)거래]	외 환 거 래 기 본 약 관 삭제	약관명칭변경 불필요한 문구 삭제
이 외환거래 기본약관(이하 “약관”이라 합니다)은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 이라 합니다)과 신청인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외환거래를 신속, 정확하게 처리하는 한편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.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•게시하고 신청인은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	이 외환거래 기본약관(이하 “약관”이라 한다)은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 이라 한다)과 신청인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외환거래를 신속, 정확하게 처리하는 한편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.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•게시하고 신청인은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	문언정비
제1조 ~ 제4조 (생략)	제1조 ~ 제4조 (생략)	
제5조 외화수표 등의 매입 및 추심 ①항의 2. 손해배상금 환가료 징수기간 만료일 익일(부도처리가 환가료징수기간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 도처리일)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여신연체이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	제5조 외화수표 등의 매입 및 추심 ①항의 2. 손해배상금 매입이자(매입한 외화수표의 추심에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자로 은행은 “환가료”라 합니다) 징수기간 (은행이 내부규정으로 정한 매입 외화수표의 예상추심기간) 최종일까지 입금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(매입이자 징수기간 내에 지급거절 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도처리일)부터 실제 상환한 날 전날까지 여신연체이율로 계산한 금액	문언정비

제7조 준용규정 신청인과 은행은 이 약관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는 한 국제상업회의소의 [추심에 관한 통일규칙], 무역업무자동화처리약관, 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 및 은행의 관련규정에 따르기로 합니다.	제7조(준용규정) 신청인과 은행은 이 약관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는 한 국제상업회의소의[추심에 관한 통일규칙], 전자무역업무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 및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(구 하나은행)을 따르기로 합니다. 부칙 제 1조 [시행일] 이 약관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	약관명정비 소멸법인명칭부기,적용대상약관명칭명확화 부칙 신설